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대상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제외돼 있어 다소 차별의 여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복지 확대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